성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가. 「지방세 특례제한법」이 2011. 12. 31 개정됨에 따라, □□한센정착 농원지원을 위한 감면□□등 조례로 규정된 감면내용 중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이관되는 감면내용은 삭제하고,

나.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등「성주군 군세 감면조례」를 전부 개정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기존 군 조례에서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이관된 조항

❍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(현행조례 제5조) : 특례제한법 제17조의2

☞ 한센환자가 소유하는 한센인 정착농원 내의 주거용, 부속토지, 축사용부동산 → 재산세 면제

❍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(현행조례 제4조): 특례제한법제38조 제4항

☞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→ 재산세,주민세(재산분) 지방소득세(종업원분) 면제

❍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(현행조례 제9조) : 특례제한법 제5조의2

☞ 지식산업센터 승인받은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→ 재산세 50% 경감

❍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(현행조례제10조) : 특례제한법제85조의2

☞ 지방공사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→ 재산세, 주민세(재산분), 지방소득세 (종업원분) 면제

❍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(현행조례제11조) :특례제한법60조제4항

☞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→ 재산세 50% 경감,주민세(재산분), 지방소득세(종업원분) 면제

❍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(현행조례 제12조) : 특례제한법 제56조제3항

☞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→ 재산세 50% 경감,주민세(재산분),지방소득세(종업원분)면제

❍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(현행조례제15조) : 특례제한법제58조제4항
☞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해당사업을 영위한 경우 → 재산세 50% 경감

나. 기존 조례에서 존치 및 기간 연장한 조항
❍ 안 제2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
☞ 시각장애 4등급인 자가 보철용·생업활동용 → 자동차세 면제
❍ 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
☞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 → 재산세 면제(2012.12.31.)
❍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
☞ 문화재지정 및 문화재 보호구역안 부동산 → 재산세 감면
❍ 안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
☞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→ 재산세 50%감면
❍ 안 제6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
☞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 → 재산세 감면대상 세액 전액 면제(10년), 50% 경감(5년)
❍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
☞ 농공단지(성주,선남,월항)에 대체입주 부동산→ 재산세 50%감면
❍ 안 제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
☞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용 부동산 → 재산세 면제(5년) , 재산세 50% 경감(3년)
❍ 안 제10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
☞ 자동계좌이체 방식 → 고지서 1장당 : 150원
☞ 자동계좌이체, 전자송달 방식 → 고지서 1장당 : 300원

다. 신설된 조항
❍ 안 제9조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
☞ 일반도시가스사업 및 가스도매사업자 : 재산세 50% 경감
☞ 한국가스공사 : 재산세 면제

4. 관계법령
○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

5. 검토의견

○ 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계법령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.

○ 본 개정조례안은「지방세 특례제한법」이 2011. 12. 31 개정됨에 따라 “한센정착 농원지원을 위한 감면”, “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”, “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”, 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”, 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” 등 현행 조례로 규정된 감면내용 중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이관되는 감면내용은 조례에서 삭제토록 하고,

○ 기존 조례에서 존치 및 기간연장하는 감면사항인 “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”, “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”, “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” 등의 내용은 존치 또는 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하여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

○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